



##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2년 2월호

### Contents

#### 회계정보

-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세무 및 법률정보

-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mailto: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http://www.crowe.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 “2021년 결산 시 꼭 확인하세요” -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21.12.31]

개요

I.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21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 ①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여 법정기한 내에 감사 前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철저히 준비하고 감사인도 충실한 감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③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④ 회사와 감사인은 충분히 논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⑤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고, 발견시에는 신속하게 정정해야 합니다.
- ⑥ 외부감사 보수 및 시간을 사업보고서 등에 충실히 기재하고 회사와 감사인 모두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⑦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금감원 회계포탈 및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지적사례'와 '질의회신'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II.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자기책임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제출

1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제출

◆ 회사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함

\*거래소(상장법인) 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제출대상)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물론 금융회사\*(상장 여부 및 자산규모 불문)도 제출대상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미제출 시 공시) 상장법인은 감사前 재무제표를 증선위·감사인에 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 등을 제출·공시해야 함

\* (상장법인)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제출대상	□ 주권상장법인,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제출서류	□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식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처	□ 상장법인: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제출시점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구분	일반회사	회생절차 진행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	정기주총일 6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연결 재무제표	K-IFRS 적용	정기주총일 4주전*
K-IFRS 미적용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직전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일)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전(별도) 또는 4주전(연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기한 내 미제출 사유 공시 제도 개요>

제출대상	□ 주권상장법인
제출처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내용	□ 기한 내 미제출 사유
공시시점	□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개요"의 제출시점 항목 참조

□ (점검 결과)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13.12.30.) 이후 위반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9년 크게 증가

\* (상장법인) 167사('15년)→49사('16년)→39사('17년)→49사('18년)→24사  
(비상장법인) 계도 ('15년)→284사('16년)→107사('17년)→75사('18년)→182사

◦ 여전히 일부는 관련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지연제출하여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받고 있으며,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의 기한 내 미제출 사유 제출의무 위반도 지속적으로 발생\*

\* '18년 49사 중 46사 미제출, '19년 23사 중 23사 미제출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및 조치 현황>

(단위 : 사)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상장	미제출	59	20	22	17	11
	지연제출	97	18	17	32	13
	부실기재	11	11	-	-	-
	<b>위반 계</b>	<b>167</b>	<b>49</b>	<b>39</b>	<b>49</b>	<b>24</b>
	사유제출				3	0
	총 회사수	2,017	2,097	2,167	2,244	2,324
비상장	미제출	-	113	55	29	86
	지연제출	-	164	52	46	96
	부실기재	-	7	-	-	-
	<b>위반 계</b>	<b>-</b>	<b>284</b>	<b>107</b>	<b>75</b>	<b>182</b>
	총 회사수	-	2,533	2,687	2,986	3,124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상장	감사인 2년	-	4	2	-	1
	지정 1년	3	19	9	12	4
	경고	56	26	27	21	13
	주의	56	-	1	16	5
	조치없음	52	-	-	-	1
	<b>위반 계</b>	<b>167</b>	<b>49</b>	<b>39</b>	<b>49</b>	<b>24</b>
비상장	감사인 2년	-	-	-	1	-
	지정 1년	-	31	14	3	7
	경고	-	46	41	24	60
	주의	-	70	52	47	115
	조치없음	-	137	-	-	-
	<b>위반 계</b>	<b>-</b>	<b>284</b>	<b>107</b>	<b>75</b>	<b>182</b>

유의사항

⇒ (회사) 회계전문인력 총원 등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할 필요

\*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행위 금지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를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함

⇒ (감사인) 관련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라 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확인, 재무제표 최종 확정 절차 검토 등에 더욱 주의할 필요

[참고] 주요 위반 예시

✓(기한 계산 착오)A사는 20XX년 3월 30일(화)이 정기주주총회일로, 법정기한(6주 전)인 20XX년 2월 15일(월)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하나, 기한 계산 착오\*로 20XX년 2월 16일(화요일)에 제출

\* 초일 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정기주총일)은 불산입하고 역으로 6주 전(별도), 4주 전(연결)을 계산

✓(정기주총 시기 변경)B사는 20XX년 3월 26(금)에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예정하여 계산된 제출기한 2월 11일에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하였으나, 1일 앞당겨 3월 25(목)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법정기한(6주 전)을 1일 초과

✓(법규 인식 미비)금융회사인 C사는 신외감법에 따라 자산규모·상장여부와 무관하게 제출대상이 되었으나,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자산 1,000억원 미만 비상장법인이므로 제출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미제출

✓(파일 업로드 미완료)D사는 재무제표 제출 관련 일부 정보를 입력하였으나, 재무제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은 채 접수처 홈페이지에서 이탈하여 재무제표가 미제출

<금감원 담당자>

구분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상장법인*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김동준 검사역	3145-7715
비상장법인	회계조사국 회계조사총괄팀	강민정 검사역	3145-7322

\*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거래소"에 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철저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철저

◆ '20 회계연도말 기준 자산 5 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21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상장회사는 '19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며, '21회계연도는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가 적용 대상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 시점 : '19년(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 → '20년(5천억원 이상) → '22년(1천억원 이상) → '23년(전체)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비고	설명		
대상	상장회사 + 직전 사업연도 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운영	대표이사가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내부회계관리자(상근임원)를 지정하여 운영		
검증	내부	대표자	자체 운영실태 점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감사(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외부	외부감사인	감사(상장사) 또는 검토(비상장사)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검증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보고서)

② (감사의 의미)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이 효과적이지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절차 요구

- (검토) 감사인은 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검증절차를 담당자 질문 위주로 수행하며, 검증대상도 회사가 자체점검한 '운영실태보고서'로 한정

- (감사) 감사인은 질문은 물론 문서검사, 재수행, 관찰 등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도 수행하며, 그 대상을 '운영실태보고서' 외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로까지 확대

③ (해외사례) '0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상장회사의 경우 '20년 비적정의견 비율은 4.6% 수준

**유의사항**

- ⇒ (회사)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
-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 평가를 수행하고,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한 뒤 평가의견을 형성할 필요
- ⇒ (감사인) 모범규준, 감사기준, 감사 FAQ 등에 따라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조서화할 필요

**<금감원 담당자>**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관리국 금융회계팀	신민철 선임조사역	3145-7972

**※ 참고 보도자료**

-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19.12.20.)
-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20.9.29.)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적용 사례 마련('21.1.29.)
-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21.5.6.)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21.7.12.)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1.7.14.)
- 2020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21.9.24.)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  
및 신중한 회계처리

3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 및 신중한 회계처리

◆회사는 금감원이 사전예고('21.6 월)한 '22 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21.6월 심사·감리사례 및 전문가 설문 등을 감안하여 '22년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예고

\*①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②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③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④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21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

유의사항

⇒ (공통)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

◦회계이슈별로 중점심사 대상 업종도 제시하므로 해당 업종 회사 및 감사인은 보다 신중하게 결산 및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

<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

- ①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내·외부 정보를 종합하여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징후가 있다면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검사 수행
- ②(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K-IFRS 제1115호에 따라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거래금액 및 채권 잔액 등 주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공시
- ③(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약정·계약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금융부채를 누락 없이 각 범주별로 적정하게 인식 및 후속 측정하고, 금융위험에 관한 질적·양적 정보 등 주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 ④(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영업이익으로 적정하게 표시하고, 보고부문 및 주요 지역·고객 등에 대한 정보 등 주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금감원 담당자>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심사국 테마심사팀	범진수 수석검사역	3145-7713

※ 참고 보도자료

- 2022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21.6.28.)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  
핵심감사사항을  
충실히 기재

4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 핵심감사사항을 충실히 기재

◆ **상장회사(코넥스 제외)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합니다.**

□ **상장회사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및 관련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 회계감사기준서 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참고] 핵심감사사항(KAM)

□(적용대상 및 시기) '20.12.15. 이후 발행 감사보고서부터 **소상장회사(코넥스 제외)** 적용

□(의미) 회사의 주요 위험요인을 정보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사 지배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KAM)**을 선정토록 하고, 그 선정 이유, 왜곡표시 위험, 수행한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 본문에 기재**토록 함

◦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이해도 및 감사보고서의 유용성 제고

□(선정 및 기재) 3단계에 걸쳐 진행

◦ [1단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상\* 확인

\* 중요하게 왜곡 표시될 위험 또는 유의한 위험이 높은 분야, 유의한 경영진의 판단, 높은 추정 불확실성, 당기 유의한 사건 또는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효과 등

◦ [2단계] 감사인의 유의적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파악 및 **KAM 선정**

◦ [3단계] **감사보고서에** ①주요감사사항으로 **선정한 이유**와 ②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을 기재

□ (점검 결과) **소상장사(2,212개)**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20년 사업연도 연결(개별)감사보고서상 KAM 기재실태**를 점검한 결과

◦ KAM 선정 개수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상당히 적고**<sup>1)</sup>, **기재내용이 미흡**<sup>2)</sup>하거나 선정된 KAM이 **없다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기재**<sup>3)</sup>하지 않은 회사도 **일부 발견**됨

주: 1) 회사당 KAM이 평균 1.09개에 불과[유럽 142개 상장회사 '16년 평균 KAM은 3.8개(최대 9개)]

2) 회사 특유의 개별적 상황을 기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서 내용만 기재

3) KAM이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감사인은 KAM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사보고서 별도 단락에 해당 사실을 기술해야 함(감사기준서 701 문단 16, A59)

◦ 감사인과 지배기구 간 **KAM 관련 커뮤니케이션 횟수도 0.96 회**에 불과하며,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회사 비율도 45.1%**로 높은 수준



회계오류 예방노력  
및 과거 유류  
발견시 신속정정

5

회계오류 예방노력 및 과거오류 발견시에는 신속 정정

- ◆ 회계결산 및 기말감사를 철저하게 실시함으로써, 재무제표 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 회계오류를 자진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크더라도 계도 조치(경고 이하)만 합니다.

□(회계오류 예방·수정절차)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공정·타당하게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회계오류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발견 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이하 '감사조직')에 통보하고, 감사조직은 필요시 외부조사를 실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당기 감사인 및 경영진은 회계오류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수정방식 등을 결정할 필요

※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사실, 수정사항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 및 감사주체, 전·당기감사인 및 경영진 간 커뮤니케이션 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필요

□(자진정정 감경제도)담당자의 착오 또는 복잡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하여 회계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규모가 크더라도 재무제표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 종결

※ 오류수정 규모가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미만인 경우 등에는 재무제표 심사 미실시

◦위반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감리를 실시하고 제재를 하되, 자진정정의 경우에는 조치수준을 감경

□(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정정 현황)'20년 중 125개 상장회사'가 감사보고서를 총 305회 정정하였으며, 이 중 재무제표 정정은 290회

\* 전체 상장회사('20년말 2,382사)의 5.2%

◦오류발견 또는 재감사 등에 따라 20개 상장회사의 감사의견이 변경

**유의사항**

⇒ (회사) 주요·신규 거래유형에 대하여 관련 회계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하는 등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과거 회계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오류를 신속·적정하게 수정하고 수정내용을 충분히 공시할 필요

⇒ (감사인) 회사 재무제표가 왜곡표시되지 않도록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여 수행해야 하며, 중요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회사 감사조직에 통보해야 함

⇒ (공통) 변경된 감사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당기감사인과 회사 경영진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계오류 여부를 판단하고, 공시자료 수정 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  
 \* 전기감사인이 오류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기감사인은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강조사항)에 반드시 기재

◦필요시 전·당기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간 협의 후 회사의 신청으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의 조율절차\*를 거칠 수 있음  
 \*동 조정협의회를 거친 후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 만을 수정한 경우,사업보고서에 ①주요 협의내용, ②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에 대한 세부정보 등을 기재 (‘21.1.2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금감원 담당자>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조사국 회계조사총괄팀	윤지혜 수석검사역	3145-7295

※ 참고 보도자료

-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19.12.25.)
-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20.1.9.)
- ‘20년 중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21.7.4.)
-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21.10.17.)

외부감사 보수와  
시간 공시 및  
관리 철저

**6 외부감사 보수·시간 공시 및 관리 철저**

◆ 외부감사 보수 및 시간은 계약내역과 실제수행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회사와 감사인 모두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시) 감사인은 감사 소요시간 등이 기재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고

◦ 사업보고서 제출 회사는 외부감사보수 및 시간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계약내역과 실제수행내역을 구분하여 기재

[참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5-2-1조(회계감사인인 감사의견 등) ① 공시대상기간중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중간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인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xx기						
제xx기						
제xx기						

□ (모니터링) 지정확대 등에 따른 회사와 감사인간 감사보수 등 계약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회사와 감사인 모두 감사시간과 보수 등에 대한 통제를 철저하게 하고 이를 충실하게 기재하는 등 관리 필요

□ (점검 결과) 20년도 사업보고서 기재실태 점검결과 총 2,602사 중 204사\*가 감사보수 및 시간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누락하거나, 구분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공시서식 개정내용이 결산시 충분히 숙지되지 않아 '19년(62사) 대비 3배 이상 증가

◦상당수의 회사가 계약내역과 실제수행내역을 동일하게 작성하는 등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향

◦'21년 결산시 사업보고서 본문에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감사보수 등의 합리적 산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인 점을 고려하여 실제 수행내역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기재할 필요

유의사항

⇒ (회사) 사업보고서 본문에 감사보수 및 시간을 계약내역과 실제수행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실제 감사투입시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감사보수와 시간을 관리할 필요

⇒ (감사인) 외부감사 실시내용과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하는 감사보수와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공시할 필요

<금감원 담당자>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김한상 선임검사역	3145-7728

※ 참고 보도자료

- 2020년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21.6.2.)
- 회계법인 감사시간 관리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18.3.20.)

까다로운 회계처리  
기준의 해석은  
지적 사례 및  
질의회신 사례 활용

7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지적사례' 및 '질의회신사례' 활용

◆ 회계포탈에 공개된 과거 감리 지적사례와 회계포탈 및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면, 어려운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적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회사는 과거 감리 지적 사례 및 주요 질의회신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결산 시 적절히 활용할 필요

[참고]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질의회신 및 지적사례

□ (회사 회계처리) 회사는 K-IFRS 최초 적용 시 별도재무제표의 관계회사투자주식에 대해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지분법이익이 반영된 장부가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발생)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미인식하여 왔음

□ (질의회신) 2019-I-KQA006, 2020-I-KQA016

◦ 일반적으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는 그 기업을 지배하지 않으므로, 관계기업의 배당 및 청산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계약적 권리 또는 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하여야 함

□ (지적내용) 회사가 관계기업의 배당 및 청산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계약적 권리 또는 약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연법인세부채를 미인식한 점을 지적

※ 동 지적사례에 대한 상세 내용은 '21.12.23. 회계포탈에 게시한 2021년도 회계현안설명회 설명자료 중 2021년도 금감원 회계심사·감리결과 주요 지적 사례 및 유의사항' 참조

◦ 회사들이 결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심사·감리결과 지적 사례를 정리하여 회계포탈에 게시

◦ 주요 질의회신 사례는 회계포탈(acct.fss.or.kr) 및 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에 공개

**유의사항**

⇒ (공통) 충실한 회계 결산 및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감리 지적 및 주요 질의회신 사례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

<금감원 담당자>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업무구분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이성진 수석검사역	3145-7706	지적사례
회계조사국 회계조사총괄팀	윤지혜 수석검사역	3145-7295	지적사례
회계조사국 기획감리팀	구차성 수석검사역	3145-7295	이연법인세 사례
회계관리국 금융회계팀	정승미 수석조사역	3145-7973	질의회신
회계관리국 국제회계기준팀	손정남 전문감독관	3145-7984	질의회신

**Ⅲ. 향후 계획**

□ 동 유의사항을 상장협·코스닥협·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 이후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 위임 사항 등 규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기획재정부는 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시행('22. 3월 중순)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재난에 따른 연금 인출 시 분리과세 한도 등 규정 (소득칙 §11 의 2)**

<시행령 개정내용(§100 의 2④)>

-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추가
- 분리과세가 인정되는 한도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연금 인출 한도와 증빙서류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추가
○ (적용대상) 가입자(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에 따른 연금 인출	○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에 따른 연금 인출 추가
○ (분리과세 한도) 다음 금액의 합계액 -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 휴직 또는 휴업 월수 x 150만원 - 200만원	(좌 동)
○ (증빙서류)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휴직 증명서 등	

<개정이유> 연금 인출 시 분리과세 한도 금액 등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의제취득가액 적용 대상 소액주주 판단 시점 명확화 (소득칙 §69 의 8)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소액주주 판단시점	<input type="checkbox"/> 판단시점 명확화
○ '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23년 과세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23년 시행

<개정이유> 의제취득가액 적용 소액주주 판단 시점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세액공제율을 우대하는 의료비의 증빙서류 신설 (소득칙 §58)

<시행령 개정내용(§118 의 5⑤⑥)>

- 높은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sup>1)</sup>·선천성이상아<sup>2)</sup>·(20%)·난임시술<sup>3)</sup> (30%)에 대한 의료비 정의를 신설
- \* 1) 미숙아 : 의료기관의 장이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함에 따라 지급한 의료비
- 2) 선천성이상아 : 해당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의료비
- 3) 난임시술 : 「모자보건법」 §2 제 12 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우대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율을 우대하는 의료비의 증빙서류
	○ 진단서, 출생증명서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기부금영수증 포함내용 명확화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 (법인칙 §19의3, 소득칙 §58)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기부금영수증을 단순히 서식*으로 규정</p> <p>* 「법인칙」: [별지 63호의3] 서식 「소득칙」: [별지 45호의2]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지점이 기부금을 받는 경우, 본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21.7.9. 이후 지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7.9.)</p>	<p><input type="checkbox"/> 기부금영수증 포함내용을 본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 형식만 서식으로 규정</p> <p>○ 기부금영수증은 아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p> <p>①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소재지</p> <p>② 발급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p> <p>- 지점·분사무소가 기부받은 경우 <b>지점·분사무소 기준의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를 추가로 포함 가능</b></p> <p>③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p>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포함 내용 명확화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5.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에 비재무적 사항 포함  
(국조칙§2 의 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금전대차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p> <p>○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채무자 신용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구체화</p> <p>○ (좌 등)</p> <p>○ 채무자의 신용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li> <li>-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기업군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li> <li>- 평가 상향 요인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li> </ul>

<개정이유> 금전대차 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 시 고려사항 구체화  
(OECD 이전가격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6. 간주정상이자율 산정 기준 변경 (국조칙§3)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대여) 당좌대출이자율 (연 4.6%)</li> <li>○ (자금차입) 12개월 만기 통화별 LIBOR 금리* + 1.5%</li> </ul> <p>*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p> <p>- 단, LIBOR가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달러화 기준 LIBOR금리 + 1.5%</p>	<p><input type="checkbox"/> 간주정상이자율 기준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차입통화별 지표금리 + 1.5%</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통화</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표금리</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 KRW</td> <td>한국무위험지표금리 (KOF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미국 USD</td> <td>미국 국채 담보익일물 RP금리(SOF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유럽연합 EUR</td> <td>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EST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영국 GBP</td> <td>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SONIA)</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스위스 CHF</td> <td>은행간 익일물 RP금리 (SARON)</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본 JPY</td> <td>금융기관간 익일물 무담보 콜거래금리(TONA)</td> </tr> </tbody> </table> <p>* 그 밖의 통화는 미국 달러화 기준</p>	통화	지표금리	한국 KRW	한국무위험지표금리 (KOFR)	미국 USD	미국 국채 담보익일물 RP금리(SOFR)	유럽연합 EUR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ESTR)	영국 GBP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SONIA)	스위스 CHF	은행간 익일물 RP금리 (SARON)	일본 JPY	금융기관간 익일물 무담보 콜거래금리(TONA)
통화	지표금리														
한국 KRW	한국무위험지표금리 (KOFR)														
미국 USD	미국 국채 담보익일물 RP금리(SOFR)														
유럽연합 EUR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ESTR)														
영국 GBP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SONIA)														
스위스 CHF	은행간 익일물 RP금리 (SARON)														
일본 JPY	금융기관간 익일물 무담보 콜거래금리(TONA)														

<개정이유> 런던은행 간 대출이자율 고시 중단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기준금리 변경

<적용시기> '22.1.1. 이후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7. 지급보증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시 고려사항 보완 (국조칙§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급보증 거래에 관한 정상가격 산출 시 고려사항  ○ (신용등급) 재무적·비재무적 정보  <추 가>  ○ (예상부도율)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 (보증금액 예상회수율)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 여부·시기·만기 등	<input type="checkbox"/> 지급보증 거래 시 고려사항에 암묵적 지원 추가  ○ (좌 등)  - 평가 상향 요인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  ○ (좌 등)  ○ (좌 등)

<개정이유> 지급보증 거래에서 정상가격 산정 시 고려사항 구체화 (OECD 이전가격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8.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 신설 (부가칙§66의 2, 별지 제 37 호의 3 신설)

<법 개정내용(§53의 2⑦)>

국세청장은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  ○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관 중인 거래명세 원자료(raw data)를 전자파일로 제출 가능

<개정이유> 법에서 위임한 거래명세서 서식 및 제출방법 규정

<적용시기> '22.7.1.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9.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공통 R&D 비용 안분방법 규정 (조특칙 §7)

< 시행령 개정내용(§9⑫)>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공통비용에 대한 안분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일반 R&amp;D와 신성장·원천기술 R&amp;D 공통비용* 안분방법</p> <p>*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과 일반 연구개발에 동시에 사용된 인건비·재료비 등</p> <p>○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 일반 R&amp;D 비용</p> <p>○ (재료비 등) 일반 및 신성장 연구인력 인건비를 기준으로 안분</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① : <math>\frac{\text{공통 재료비} \times \text{신성장 인건비}}{\text{신성장 인건비} + \text{일반 인건비}}</math> = 신성장·원천기술 R&amp;D비용</p> <p>② : [공통 재료비 - ①] = 일반 R&amp;D비용</p> </div>	<p><input type="checkbox"/> 국가전략기술 R&amp;D의 공통비용 발생시 안분방법 추가</p> <p>○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i) 신성장 R&amp;D와 국가전략 기술 R&amp;D가 공통인 경우 : 신성장 R&amp;D비용</p> <p>ii) 그 외의 경우 : 일반 R&amp;D비용</p> </div> <p>○ (재료비 등) 일반, 신성장 및 국가전략 기술 연구인력 인건비를 기준으로 안분</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① : <math>\frac{\text{공통 재료비} \times \text{국가전략기술 인건비}}{\text{국가전략기술 인건비} + \text{신성장 인건비} + \text{일반 인건비}}</math> = 국가전략기술 R&amp;D비용</p> <p>② : <math>\frac{\text{공통 재료비} \times \text{신성장 인건비}}{\text{국가전략기술 인건비} + \text{신성장 인건비} + \text{일반 인건비}}</math> = 신성장 R&amp;D비용</p> <p>③ : [공통재료비 - ① - ②] = 일반 R&amp;D</p> </div>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통비용 안분방법 규정

<적용시기> '22.7.1.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11.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 (조특칙 §14 의 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증대세제* 중소기업 적용 특례</p> <p>*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대기업 5%, 중견 10%, 중소 20%)</p> <p>○ 중소기업은 임금 증가율이 3.8%*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가능</p> <p>*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조특령 §26의4⑯)</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준 조정</p> <p>○ 3.8% → 3.0%</p>

<개정이유> 최근 3년간('19~'21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반영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2.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투자요건 적용기준 신설 (조특칙§24)

< 시행령 개정내용(§60 의 2④)>

- 본사 지방이전 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최소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기준 : 투자금액 10 억원 이상 + 근무인원 20 명 이상
- 투자 대상(사업용자산의 범위) 및 투자금액의 계산 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축물, 차량 등 포함)과 건설 중인 자산</li> </ul> </li> <li>□ 투자금액 계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금액 산입기간 동안의 투자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을 차감</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투자금액 = A - B</b></p> <p><b>A</b> : 투자금액 산입 기간 동안의 투자합계액  <b>B</b> : 투자금액 산입 기간 동안 취득한 이전본사의 자산 중 중도 처분한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p> <p>* 투자금액 산입 기간 : 본사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과세연도까지</p> </div>

<개정이유> 투자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및 투자금액의 계산 방법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부터 적용

1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액 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규정 보완  
(조특칙§45 의 9②)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p> <p>○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b>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b> 시 20% 세율로 추가 과세</p> <p>*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 국세환급금 이자 등 - <u>법인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u> 등</p> <p>○ 기업소득 차감항목</p> <p>- (법인세액)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p> <p>-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p>	<p><input type="checkbox"/> 기업소득 차감항목 보완</p> <p>(좌 동)</p> <p>- (법인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p> <p>-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p>

<개정이유> 기업소득 환류여력 반영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8172, 2022.02.14)

(사실관계)

- 신청인은 내국법인A의 최대주주로서 현재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5%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기로 약정하여, 추가 취득 후의 신청인의 지분은 다음과 같음.

	지분을	취득가액
최초 취득 주식	20%	1,000원(액면가액)
추가 취득 주식	5%	30,000원

- 최초 취득 주식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추가 취득 주식은 주권을 발행하여 신청인이 보유할 예정이며,

- 추가 취득 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주권발행번호 기재된 것), 주권 교부 및 대금 지급 영수증, 주주명부를 구비할 예정

- 신청인은 추가 취득 주식(5%)를 추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데, 양도 주식에 대해서도 추가 취득 주식의 주권발행번호를 기재할 예정임.

(질의요지)

- 비상장주식회사 주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일부 주식 매각 시 주권발행번호를 특정하여 기재한다면, 양도 대상을 주식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기준 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1-법규재산-1820, 2022.01.25)

(사실관계)

○ 갑은 2012.4.\*\*. 취득한 '□□ 광역시 △△구 ◎◎동 \*\*\*-\*' ◇◇◇◇◇◇ 401호(이하 "쟁점부동산")를 현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전세보증금 120,000,000원과 함께 2021.10.\*\*. 을에게 부담부증여함.

○ 쟁점부동산은 다세대주택으로 증여일인 2021.10.\*\*.을 기준으로 증여 전 6개월 및 증여 후 3개월 내에 매매사례는 없음.

- 증여당시인 2021년 기준시가는 95,100,000원으로 공시되었고, 취득 당시인 2011년도의 기준시가는 85,000,000원임.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령§61⑤에 따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사전법령재산-735, 2021.06.23.)를 참고하기 바람.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 2021.06.23.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영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법령해석부가 2021-1414, 2021.11.29)

(사실관계)

- 신청법인(이하 "A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직구 사이트 △△△몰 등을 운영하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법인과 전자지불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지불대행서비스(이하 "PG서비스") 이용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하여 '21.8월부터 PG서비스를 제공함.
- A법인은 B법인에게 전자지불대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넷 등(이하 "PG제공회사")와 2차 PG계약(영업대행제휴계약)을 체결하고 PG제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불시스템을 이용함
- B법인은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품 및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몰에서 상품 및 용역서비스를 구매하고 A법인이 제공하는 PG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금액을 결제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B법인의 상품 및 용역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A법인이 제공하는 PG서비스 이용시 신용카드, 가상계좌, 계좌이체, 휴대폰, 에스프로 등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하고 있음.
- A법인은 B법인의 몰에서 PG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판매대금 중 B법인이 PG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서 판매대금의 5%(A법인의 서비스 수수료, 결제기관의 결제수수료 등)를 공제하고, 신용카드 등 정산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B법인에 외화(엔화)를 송금하고 있음.
- 2013.12.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의 개정, 제50조의2 신설로 국외 사이버몰에서의 상거래에 수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결제대행사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전금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경우 국외 사이버몰을 통한 상거래에 대해서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전금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9.5.20.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함.

(질의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에게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회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외 사이버몰에서의 상거래에 수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과 전자지불 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영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 <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 </ul>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a href="mailto:secretary@crowe.kr">secretary@crowe.kr</a>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